|  |  |  |
| --- | --- | --- |
| **소프트웨어제품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1]10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발전을 더욱 장려하는 약간의 정책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1]4호)의 유관 정신을 실행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더욱 더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정책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자가 개발하여 생산한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7%의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후, 증치세 실제 세부담액이 3%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하여 “징수 후 즉시 환급”정책을 시행한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수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현지화 개조를 진행한 후에 대외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정책을 누릴 수 있다.  현지화 개조란 수입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재설계, 개선, 전환 등을 진행한 것을 의미하며 수입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단순한 중문화 처리를 진행한 것은 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납세자가 수탁을 받아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였고,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징수한다.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거나 쌍방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가판권국의 등기등록을 거쳐, 납세자가 판매와 동시에 저작권 및 소유권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계 및 분류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정보처리절차, 유관 문서 및 데이터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정보시스템 및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한다.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에 삽입되고 그와 함께 일괄 판매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한다.  3.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1) 성급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부문이 인가한 소프트웨어 검측기구가 발급한 검측증명 자료를 취득한 경우  (2)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부문이 발급한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증서> 또는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증서>를 취득한 경우  4.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의 “징수 후 즉시 환급” 세액 계산  (1)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의 계산방법  즉시징수-즉시환급 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3%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공제가능 매입세액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 당기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17%  (2)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의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 세액계산:  1)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의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 계산방법  즉시징수-즉시환급 세액 =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3%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납부세액 =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공제가능 매입세액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세액 =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17%  2)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의 계산공식  당기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액 =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기계설비 매출액 합계 – 당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매출액  당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의 매출액은 아래에서 열거한 순서로 확정한다.  ① 납세자의 최근 동일기간-동일종류 화물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  ② 기타 납세자의 최근 동일기간-동일종류 화물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계산확정  ③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원가를 구성하는 세금계산 가격에 따라 계산확정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의 원가를 구성하는 세금계산 가격 = 컴퓨터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원가\*(1+10%)  5. 상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즉시징수-즉시반환세액이 0보다 큰 경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세금환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6. 증치세 일반납세자가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기타 화물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원가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이 분담해야 하는 매입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전용되는 설비와 공구에 대한 매입세액은 분담할 수 없다. 납세자는 선정된 분배방식을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해야 하고, 비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생산에 전용되는 설비와 공구에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설비, READ와 WRITE 인쇄 기구설비, 공구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테스트설비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7.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와 함께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을 일괄 판매하고 본 통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가를 구성하는 세금계산 가격을 기준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기계설비 매출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삽입식 소프트웨어 제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계설비 부문의 원가를 분리하여 확인 계산해야 한다. 분리가 되지 않거나 분명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8.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기관은 본 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증치세 징수 후 즉시 환급에 관한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주관 세무기관은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허위 또는 사기로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또한 상술한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한 연도부터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정책의 향유자격을 취소하며, 납세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9.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중공중앙 국무원의 기술혁신 강화, 하이테크 기술 발전, 산업화 실현에 관한 결정” 관련 세수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9]273호) 제1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세관총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발전 관련 약간의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0]25호) 제1조 제1항, <국가세무총국의 전자출판물 귀속 소프트웨어 세금징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한 통지>(국세함[2000]168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약간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5]165호) 제11조 제1항과 제3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삽입식 소프트웨어 증치세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6]174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삽입식 소프트웨어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8]92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유관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65호) 제1조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0월 13일 |  | **关于软件产品增值税政策的**  **通知**  财税[2011]10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落实《国务院关于印发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国发[2011]4号）的有关精神，进一步促进软件产业发展，推动我国信息化建设，现将软件产品增值税政策通知如下：    　　一、 软件产品增值税政策  　　（一）增值税一般纳税人销售其自行开发生产的软件产品，按17%税率征收增值税后，对其增值税实际税负超过3%的部分实行即征即退政策。  　　（二）增值税一般纳税人将进口软件产品进行本地化改造后对外销售，其销售的软件产品可享受本条第一款规定的增值税即征即退政策。  　　本地化改造是指对进口软件产品进行重新设计、改进、转换等，单纯对进口软件产品进行汉字化处理不包括在内。  　　（三）纳税人受托开发软件产品，著作权属于受托方的征收增值税，著作权属于委托方或属于双方共同拥有的不征收增值税；对经过国家版权局注册登记，纳税人在销售时一并转让著作权、所有权的，不征收增值税。    　　二、软件产品界定及分类  本通知所称软件产品，是指信息处理程序及相关文档和数据。软件产品包括计算机软件产品、信息系统和嵌入式软件产品。嵌入式软件产品是指嵌入在计算机硬件、机  器设备中并随其一并销售，构成计算机硬件、机器设备组成部分的软件产品。    　　三、满足下列条件的软件产品，经主管税务机关审核批准，可以享受本通知规定的增值税政策：  　　1．取得省级软件产业主管部门认可的软件检测机构出具的检测证明材料；  2．取得软件产业主管部门颁发的《软件产品登记证书》或著作权行政管理部门颁发的《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证书》。    　　四、软件产品增值税即征即退税额的计算  　　（一）软件产品增值税即征即退税额的计算方法：  　　即征即退税额=当期软件产品增值税应纳税额-当期软件产品销售额×3%  　　当期软件产品增值税应纳税额=当期软件产品销项税额-当期软件产品可抵扣进项税额  　　当期软件产品销项税额=当期软件产品销售额×17%  　　（二）嵌入式软件产品增值税即征即退税额的计算：  　　1．嵌入式软件产品增值税即征即退税额的计算方法  　　即征即退税额=当期嵌入式软件产品增值税应纳税额-当期嵌入式软件产品销售额×3%  　　当期嵌入式软件产品增值税应纳税额=当期嵌入式软件产品销项税额-当期嵌入式软件产品可抵扣进项税额  　　当期嵌入式软件产品销项税额=当期嵌入式软件产品销售额×17%  　　2．当期嵌入式软件产品销售额的计算公式  　　当期嵌入式软件产品销售额=当期嵌入式软件产品与计算机硬件、机器设备销售额合计-当期计算机硬件、机器设备销售额  　　计算机硬件、机器设备销售额按照下列顺序确定：  　　①按纳税人最近同期同类货物的平均销售价格计算确定；  　　②按其他纳税人最近同期同类货物的平均销售价格计算确定；  　　③按计算机硬件、机器设备组成计税价格计算确定。  　　计算机硬件、机器设备组成计税价格= 计算机硬件、机器设备成本×（1+10%）。    　　五、按照上述办法计算，即征即退税额大于零时，税务机关应按规定，及时办理退税手续。    　　六、增值税一般纳税人在销售软件产品的同时销售其他货物或者应税劳务的，对于无法划分的进项税额，应按照实际成本或销售收入比例确定软件产品应分摊的进项税额；对专用于软件产品开发生产设备及工具的进项税额，不得进行分摊。纳税人应将选定的分摊方式报主管税务机关备案，并自备案之日起一年内不得变更。  　　专用于软件产品开发生产的设备及工具，包括但不限于用于软件设计的计算机设备、读写打印器具设备、工具软件、软件平台和测试设备。    　　七、对增值税一般纳税人随同计算机硬件、机器设备一并销售嵌入式软件产品，如果适用本通知规定按照组成计税价格计算确定计算机硬件、机器设备销售额的，应当分别核算嵌入式软件产品与计算机硬件、机器设备部分的成本。凡未分别核算或者核算不清的，不得享受本通知规定的增值税政策。    　　八、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机关可根据本通知规定，制定软件产品增值税即征即退的管理办法。主管税务机关可对享受本通知规定增值税政策的纳税人进行定期或不定期检查。纳税人凡弄虚作假骗取享受本通知规定增值税政策的，税务机关除根据现行规定进行处罚外，自发生上述违法违规行为年度起，取消其享受本通知规定增值税政策的资格，纳税人三年内不得再次申请。    　　九、本通知自2011年1月1日起执行。《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贯彻落实〈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强技术创新，发展高科技，实现产业化的决定〉有关税收问题的通知》（财税字〔1999〕273号）第一条、《财政部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关于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0]25号）第一条第一款、《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电子出版物属于软件征税范围的通知》（国税函[2000]168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若干政策的通知》（财税[2005]165号）第十一条第一款和第三款、《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嵌入式软件增值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6]174号）、《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嵌入式软件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08]92号）、《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扶持动漫产业发展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9]65号）第一条同时废止。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十月十三日 |